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3.8.(월)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담 당 자	허 남 혁 주무관 (02-2100-2695)	
	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김 은 조(02-3145-7700)		권 영 민 팀 장 (02-3145-7863)	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제4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씨젠에 대해,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,
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- ※ (주)씨젠의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는 2월 8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* 2월 8일 보도자료 <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 >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불법관리청 콜센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 ·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 (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2.8. 의결)
 (제4차 금융위원회, 2021.3.8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씨젠</p> <p>결산기 : 2011.12.31. 2012.12.31. 2013.12.31.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3.31. 2019.6.30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('11년 1,457백만원, '12년 848백만원, '13년 4,241백만원, '14년 10,609백만원, '15년 14,072백만원, '16년 12,259백만원, '17년 10,163백만원, '18년 8,961백만원, '19년 1분기 9,176백만원, '19년 반기 8,117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국내·외대리점에 대하여 회사가 납품처· 품목·수량등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, -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 으로서 매출액,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함</p> <p>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('12년 31,423백만원, '14년 26,337백만원, '16년 44,650백만원, '17년 12,04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 부채로 분류함</p> <p>③ 개발비 과대계상 ('11년 5,683백만원, '12년 7,354백만원, '13년 8,807백만원, '14년 11,195백만원, '15년 12,689백만원, '16년 14,429백만원, '17년 17,00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자산 인식요건(기술적 실현가능성)을 충족 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2,514.5백만원 (대표이사 : 118.4백만원, 담당임원 : 118.4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</p> <p>- 내부통제 개선권고</p> <p>- 각서 제출요구</p> <p>※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같음</p> <p>※ 회사는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함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씨젠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4년 10,609백만원, ’15년 14,072백만원, ’16년 12,259백만원, ’17년 10,163백만원, ’18년 8,961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회사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,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·과소 계상하였음에도, - 수익인식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4년 26,337백만원, ’16년 44,650백만원, ’17년 12,046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회사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③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4년 11,195백만원, ’15년 12,689백만원, ’16년 14,429백만원, ’17년 17,00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	<p>우덕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135백만원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% - (주)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정지 6월 - (주)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일부정지 6월 - (주)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4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